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[별표 10]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(제35조제1항 관련) 1. 품질검사 시기 등 가. ~ 바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(생 략) 3.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가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) 가스도매사업자,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, <u>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</u>: 품질검사 결과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(이하 2)에서 “품질기준”이라 한다)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,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2) ~ 3) (생 략)	[별표 10]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(제35조제1항 관련) 1. 품질검사 시기 등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사.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: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가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) ----- ----- -----, <u>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,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경우</u>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) ~ 3) (현행과 같음)	○ 신규 품질검사 대상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한 품질검사 시기 지정 ○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추가